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노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결과 공개
(안 제20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점검·확인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0부터 제20조의15까지를 각각 제20조의11부터 제20조의16까지로 하고, 제2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0(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39조의17제6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확인 기간
2. 점검·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점검·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10(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39조의 17제6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동안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점검·확인 기간</u> <u>2. 점검·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 관련기관의 총 수</u> <u>3.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점검·확인 인원 수</u> <u>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u>

<u>제20조의10 ~ 제20조의15</u>	<u>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u> <u>5.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u> <u>제20조의11 ~ 제20조의16(현행 제20조의10부터 제20조의15까지와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52